

제 정 : 2021.03.23

기업지배구조헌장

2021.03.23



목 차

전 문

제1장 주주

- 제1조 : 주주의 권리
- 제2조 : 주주의 공평한 대우
- 제3조 : 주주의 책임

제2장 : 이사회

- 제4조 : 이사회 기능
- 제5조 :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
- 제6조 : 사외이사
- 제7조 : 이사회 운영
- 제8조 : 이사회 내 위원회
- 제9조 : 이사의 의무
- 제10조 : 이사의 책임

제3장 감사기구

- 제11조 : 감사위원회
- 제12조 : 외부감사인

제4장 이해관계자

- 제13조 :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

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- 제14조 : 공시
- 제15조 : 기업 경영권 시장

DL이앤씨 기업지배구조헌장

전 문

DL이앤씨(이하 "회사")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서,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세상의 기본을 만들어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.

회사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이 고객, 임직원, 협력사,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"DL이앤씨 기업지배구조헌장"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장 주 주

제1조 (주주의 권리)

-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, 주주 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,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② 정관의 변경, 합병,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,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
- ④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2조 (주주의 공평한 대우)

- ①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,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.
- ②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,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

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 (주주의 책임)

-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이 사 회

제4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, 법령 및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)

-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 이어야 하며,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,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(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전체 이사의 과반수)이어야 한다.
- ③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.
- ④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.
- ⑤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.

- ⑥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 (사외이사)

-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해야 한다. 또한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.
- ⑥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⑦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·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 (이사회 운영)

-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, 정기이사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제정·운영한다.
- ③ 이사회는 매 회의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·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- ⑤ 이사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8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모든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한다.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위원

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③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결의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9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,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,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0조 (이사의 책임)

- ①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,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,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의 법률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,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③ 이사는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사내·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. 특히 신규 선임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.

제 3 장 감사기구

제11조 (감사위원회)

-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,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,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 보고의 정확성 검토,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보고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③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, 조직,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재무담당임원,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- ⑥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.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.

제12조 (외부감사인)
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 및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④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.
- ⑥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이해관계자

제13조 (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)

-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소비자 보호,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③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,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, 감자, 분할·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.

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제14조 (공시)

-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,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⑥ 회사는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- ⑦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.
- ⑧ 회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(기업 경영권 시장)

- ① 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,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에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.
- ③ 회사는 합병,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

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